

의안번호	제 8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0월 5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공유재산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의 민간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맞게 변경하고, 서면심의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등 정비(안 제4조제3항, 제4항 및 제8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 상향(안 제5조제2항제3호)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정) 5천만원 이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3항)
  - 1건당 기준: 취득 20억원(6천㎡), 처분 10억원(5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 기간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까지로 명시(안 제61조제3항)
- 공유재산 등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66조의2)

##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를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6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제4항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역 특산물”을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으로 한다.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 :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

제33조제4항 본문 중 “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농업인”을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매각 신청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건물의 부지가 맞닿은 도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로와 접할 수 없고, 그 도유지를 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해당 건물의 부지 소유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어 매각 신청인에게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를 “신축 또는 증축할 때에는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로, “적합”을 “적합하게 설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확보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청사 및 의회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부터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한은 1년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전년도 결산 내용으로 하며,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p> <p><u>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u>④ ~ ⑥ (생략)</u></p> <p><u>&lt;신 설&gt;</u></p> <p><u>⑦ (생략)</u></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u>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u></p> <p><u>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⑨ (현행 제7항과 같음)</u></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  
-- 토지의 취득·처분

3. -----  
----- 5천만원 이하-----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무상사용허가 대상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사용허가-----  
-----  
-----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

-----  
-----  
-----

② -----  
-----  
사용허가-----  
-----

1. 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허가) -----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

6. 사용허가-----  
-----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 사용허가부-----  
-----  
-----.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허가-----



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② (생략)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 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역 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 : 100분의 30

<신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생략)

-----  
-----.

제32조(사용료·대부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  
-----  
-----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 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도 수입으로 한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 8. (생략)

<신설>

④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  
-----

4. ~ 8. (현행과 같음)

9. 매각 신청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건물의 부지가 맞닿은 도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로와 접할 수 없고, 그 도유지를 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소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해당 건물의 부지 소유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어 매각 신청인에게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삭제>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신축 또는 증축할 때에는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  
--- 적합하게 설계--.

1. ~ 6. (현행과 같음)

7.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확보

② 청사 및 의회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삭제>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부터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한은 1년으로 한다.

제66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①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전년도 결산 내용으로 하며,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관련법령 발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시행 2023. 1. 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